

◇ 외국공지와 특허출원

외국에 알려져 있는 기술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란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 하더라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원은 진정한 발명가를 보호하고자하는 특허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 개량발명과 우선권 주장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한 내용을 조금 고쳐서 이를 외국 몇 나라에 특허출원하고자 하는데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가?

우선권 주장이란 제1국에 특허출원한 자가 그 특허출원과 관련된 동일한 발명을 1년이내에 다른나라에 특허출원하는 경우에 제2국의 출원일을 제1국에 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원출원과 외국에 출원한 것과 내용이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친 부분이 요지변경이 아닌 단순한 구성의 변경, 단순한 내용의 상위, 단순한 용도한정의 유무에 해당되어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나 고친 부분이 요지변경을 한 경우, 즉 동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다. 또한 발명의 내용이 많이 고쳐져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동일한 부분만을 기초로 하여 부분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동일성을 벗어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일반출원이 되어 우선권 주장의 효과를 얻지 못한다.

◇ 특허출원과 비밀보장

새로운 발명을 하여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출원하였다가 만일 다른 사람에게 이런 내용이 알려질까 걱정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호조치는 되어있는지?

특허출원된 내용에 대하여는 출원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공개가 될 때까지는 비밀을 보장하도록 특허법에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 알려질 우려는 없다.

특허법 제217조에는 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아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신제품인 기계장치 등이 발명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면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획득하며, 그렇지 못하고 물품의 구조나 형상 또는 조합에 관한 실용적인 고안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으면 된다. 따라서 신제품이 어느 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출원하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명이나 고안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되지 않고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이들 공지·공용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또는 고안)할 수 없는 것이어야 특허(또는 실용신안)로서 등록될 수 있다.



수 없고 심사·심판이나 재심으로 계류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사정·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특허법 제229조에는 특허청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취득한 특허출원증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써 특허출원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 신제품의 산업재산권 보호

기계장치와 그 부품 및 생산품 등 여타 가지의 신제품을 개발하였는데 어떻게 하여

◇ 개량고안 결합과 실용신안권

어떤 물품의 일부분을 개량하여 다른 물품에 결합시켰던 바, 이용에 아주 편리한 물품이 되었다. 이들 각 물품은 이미 알려진 물품이라도 실용신안으로 권리리를 받을 수 있나?

출원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은 신규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각 물품이 이미 알려진 물품이라 하더라도 개량과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보다 더 높은 가치의 새로운 효과가 발생된다면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물품은 물품 일부의 개량부분과 타물품과의 결합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개량부분에 진보성이 인정되거나 공지의 두 가지 물품의 결합에 진보성이 인정되면 등록될 수 있다. 결합에 대한 진보성의 판단은 결합하기 이전에 각 물품이 가지고 있는 효과들의 합보다 더 큰 새로운 어떤 효과가 결합으로 인하여 발생된다면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